

대구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단1317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31307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단131749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문은정, 정재진

2. B

3. C

변론종결 2023. 4. 20.

판결선고 2023. 5. 18.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A 사이에 2020. 12.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D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12. 11. 접수 제2017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D와 피고 B 사이에 2021. 2.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5. 접수 제250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D와 피고 C 사이에 2021. 4.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2. 접수 제667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함)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5. 5. 29.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간 2015. 5. 29.부터 2016. 5. 27.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21. 5. 21.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 제공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② 2016. 11. 18. 보증원금 7,650만 원, 보증기간 2016. 11. 18.부터 2017. 11. 17.까지(이후, 보증기한 2021. 11. 12.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 제공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기간 중 위 각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D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2021. 4. 7.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2021. 6. 3. 기업은행에 1억 93,595,9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

(1) D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20. 12. 10. 피고 A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처분행위’라 함)을 체결한 다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12. 11. 접수 제2017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15.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처분행위’라 함)을 체결한 다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5. 접수 제250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2. 피고 C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3처분행위’라 하고, 제1, 2처분행위를 합쳐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함)을 체결한 다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2. 접수 제667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D의 자력상태

(1) 적극재산 : 143억 36,980,880원([별지2] 적극재산표)

(2) 소극재산 : 231억 73,641,239원([별지3] 소극재산표)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F기관장에 대한 각 신용정보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날은 2021. 6. 3.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 체결된 2021. 3. 3.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증사고가 2021. 4. 7.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21. 6. 3. 원고가 기업은행에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소외 회사 및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1)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피고 A은 [별지3] 소극재산표 순번 2 내지 6은 D의 보증채무이므로 소극재산으로 산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피고 A은 [별지3] 소극재산표 순번 11, 14, 16, 18, 19, 21, 22, 25 내지 33 채무액 합계 73억 76,577,690원은 소극재산에서 빠져야 하고, 이를 반영하면 D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D의 소극재산 총액은 231억 73,641,239원인데 여기에서 위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D의 소극재산의 합계는 157억 97,063,549원(=231억 73,641,239원 - 73억 76,577,690원)이고, 이는 D의 적극재산 137억 23,480,880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D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D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D가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을 정상적으로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D가 무자력자였다는 사실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을가제1호증 내지 을가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D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12. 11. 접수 제2017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5. 접수 제250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2. 접수 제667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중호

[별지1]

부동산 목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1115㎡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숙박시설(여관)
 지하3층 철근콘크리트조 기계실 36.72㎡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실 190.75㎡
 1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실 223.06㎡
 1층 일반철골구조 숙박실 5.6㎡
 2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실 223.06㎡
 2층 일반철골구조 숙박실 5.6㎡
 3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실 223.06㎡
 3층 일반철골구조 숙박실 5.6㎡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1351㎡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숙박시설(여관)
 지하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실 190.74㎡
 지하 철근콘크리트조 기계실 36.72㎡
 1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실 223.05㎡
 1층 일반철골구조 숙박시설(여관-승강기) 5.76㎡
 2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실 223.05㎡
 2층 일반철골구조 숙박시설(여관-승강기) 5.76㎡
 3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실 223.05㎡
 3층 일반철골구조 숙박시설(여관-승강기) 5.76㎡
5. 대구 수성구 대4㎡
6. 대구 수성구 대8㎡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답194㎡ -이상-

[별지2]

적극재산표

순번	재산 내역	가액(원)	입증방법
1	대구 수성구 H	12,929,529,880	갑제11호증
2	대구 수성구 H 위 지상 건물		
3	대구 수성구 I		
4	대구 수성구 I 위 지상 건물		
5	대구 수성구 J		
6	대구 수성구 K		
7	대구 수성구 L	704,220,000	갑제12호증
8	경산시 M	36,676,000	갑제8호증
9	경산시 N 위 지상 건물	53,055,000	갑제7호증
10	(주)E 주식 100%	300,000,000	
11	(주)O 주식 100%	10,000,000	
12	(주)G 주식 85%	263,500,000	
13	(주)P 주식 40%	40,000,000	
합계		14,336,980,880	

[별지3]

소극재산표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입증방법
1	원고	193,595,924	갑제3호증
2	기업은행	21,762,000	F기관
3	Q은행	137,537,000	"
4	R은행	196,950,000	"
5	S	16,521,000	"
6	T조합(동대구)	3,164,000	"
7	U	1,450,000,000	"
8	V	20,000,000	"
9	R은행(봉덕동지점)	19,999,000	"
10	W	215,813,698	갑제13호증의1
11	수성세무서	1,866,183,010	갑제13호증의2
12	남대구세무서	98,599,150	갑제13호증의3
13	X	1,767,815,495	갑제13호증의4
14	국민건강보험공단	35,977,660	갑제13호증의5
15	Y	300,000,000	갑제13호증의6
16	Z	650,000,000	갑제13호증의7
17	AA	100,000,000	갑제13호증의8
18	수성구청(지방세)	426,817,020	갑제13호증의9
19	AB	182,600,000	갑제13호증의10
20	R은행	9,820,349,668	갑제13호증의11
21	피고 C	180,000,000	갑제13호증의12
22	AC	150,000,000	갑제13호증의13
23	AD조합	264,896,814	갑제10호증의1
24	경산시	59,800	갑제10호증의4
25	AE	300,000,000	갑제4호증의1
26	AF	960,000,000	"
27	AG	720,000,000	"
28	AH	240,000,000	"
29	피고 A	360,000,000	"
30	AI	1,300,000,000	"
31	AJ	390,000,000	"
32	Z	700,000,000	"
33	피고 B	85,000,000	"
합계		23,173,641,239	

